

# 지방재정사 발간 계획수립



## 연구진

이창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차 례

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제1절 논의된 내용 .....	3
제2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5
제2장 총론: 시간적 범위 및 시대구분 .....	9
제1절 논의된 내용 .....	11
제2절 총론: 시간적 범위 및 시대구분 .....	13
제3장 각론: 지방재정제도 기술내용 및 방법 .....	21
제1절 논의된 내용 .....	23
제2절 각론: 구체적 집필내용 및 방법 .....	30
제4장 지방재정사 목차(가안) .....	53
제5장 집필체계 및 방법 .....	61
제1절 집필체계 및 자료수집 .....	63
제2절 주요 추진일정 .....	66
〈참고문헌〉 .....	69
〈부록〉 지방세60년사(지방세연구원) 참고자료 .....	70

## 표·그림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3-1> 연구의 틀 .....	26
<표 3-1> 지방재정의 분야별 구분 .....	29
<표 3-2> 지방교부세 제도의 변화 .....	32
<표 3-3> 현행 지방재정 총괄적 내용 .....	36
<그림 3-2>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법령체계 .....	41
<그림 3-3> 재정분석진단 평가 .....	45
<그림 5-1> 집필 조직도 .....	64





# 제1장

##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1절 논의된 내용

제2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제1장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제1절 논의된 내용

- 추진개요
  -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자체과제(연구책임 이창균, 외부연구진 1인 참여)로 4개월간 지방재정사 발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은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및 기본자료 정리, 문헌연구가 중심
- 연구목적과 필요성에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현 시점에서 지방재정사를 왜 편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사를 정리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역사를 발굴, 새롭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지방재정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인이나 학회가 아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할 과제임
- 지방재정사 발간을 통한 사료로서의 가치, 정책적 시사점 등 정리가 필요하고 또한 기대되는 효과를 명확히 정리해야 할 필요
- 재정사 정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사료의 발굴이 소중하지만,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들고 운용했던 담당자들의 증언도 필요함
  - 과거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50년대는 물론이고 '60년대, '70년대의 지방재정을 말해 줄 관계자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있음
  - 특히 5.16후인 1962년-63년에 한국지방재정사에 괄목한만한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담당인사들의 인터뷰가 불가능해 역사를 증언해 줄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

- 지방재정사의 명칭은 한국지방자치·행정50년사, 한국행정60년, 한국조세정책50년, 지방세 60년사 등과 같이 년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 지방재정사100년, 지방재정사70년 등 두 가지 대안을 상정함
  - 지방재정사100년은 우리나라 근대 지방재정이 사실상 구한말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100년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나 100년을 거슬러 가면 일제시대와 연결되고, 일제에 의한 지방재정제도의 구축이 강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지방재정사70년은 해방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나라 지방재정사를 평가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사실상 해방이후는 일제의 지방재정체제를 상당 부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일제 시대의 지방재정제도를 다루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1안으로 지방재정사100년을 제안하고 있는데,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100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한 것임
  - 다만, 지방재정사70년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제2안으로 제안함



## 제2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는 양과 질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면에서 한계가 있음
  - 지방재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앙재정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지방재정의 독자적인 영역이 부각되지 못함
  - 지방재정은 재정현상의 일부로 지방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지방교육, 복지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
  -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지방재정론이 중앙정부의 내무관료 혹은 지방직원의 행정실무를 위해 법규와 제도에 치중되어 강의되어왔는데, 지방분권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지방자치를 비롯한 정치행정적 상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방재정에 대한 과거의 정리와 평가가 필요함.
  - 이는 지방재정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시대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만 몰입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경우, 미래는 물론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 제도 및 정책, 연구자들의 연구과제 등의 변천과정을 정리하여 지방재정 관련 사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 이는 현재의 지방재정의 특징, 문제점을 단편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지방재정환경과 관련하여 이의 근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파악하는데 유익하다고 봄

- 예를 들어 지방양여금제도는 중앙집권적 재정운영의 일환으로 탄생하였는데, 어떤 제도가 탄생하는데 있어서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즉, 지방재정 관련 제도, 정책, 연구자료의 정리 및 평가를 통하여 지방재정 제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향후 정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지방재정 발전을 유인하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을 유인하는 것임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지방재정 관련 학계 및 연구자의 연구자료 제공을 통해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와 지방재정 운용 성과파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의 변천과 현상을 보다 명확히 함
- 이와 같은 목적 하에 본 과업은 내년도 사업수행을 위하여 1단계로 지방재정사 발간과 관련하여 연구추진 방법, 연구자료 정리 및 주요 연구내용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지방재정사 발간 작업이 연구내용 및 자료의 방대,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적 작업으로 전문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기간 소요, 사료정리와 분석 및 평가 등 실제 집필기간의 장기간 소요
  - 향후 지방재정사 발간과 관련하여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마무리되어 지방재정사가 발간될 수 있도록 1단계 사업으로 2014년 후반 기 사업으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학계, 자치단체 등 관련 연구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경제성장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방재정은 많은 변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사 발간을 통하여 지방재정이 걸어온 발자취(道程)를

-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방재정의 미래를 위한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
- 단순히 사료를 취합,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기보다는 지방재정제도와 운영실태를 재조명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되도록 하는데 발간 목적이 있음
    - 입수 가능한 자료도 중앙정부 부처가 갖고 있는 자료가 대부분으로 자료의 정리는 지방재정 제도사에 그칠 수 밖에 없어 지역의 구체적 인 역사적 자료에 사용해 지방자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일본의 지방재정사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에 주목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1950년대 이후 일본재정학회에서 독립된 일본지방재정학회가 설립되어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짐
    - 일본에서 과학으로서의 지방재정론에 관한 최초의 노작은 후지다(藤田武夫)의 ‘일본지방재정제도의 성립(1941년, 岩波書店)을 들고 있음
    - 저자는 일본의 지방자치재정의 성격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메이지시대 지방자치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제도의 성립과정과 그 내용, 성격을 일본자본주의의 발전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음
    - 그는 일본의 새로운 지방재정은 幕藩體制하의 공사미분리의 재정으로 부터 공재정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관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지우고 있음
    - 당시 시정촌의 비근대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후견인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으로 인해 일본적 형태 혹은 자치의 일본적 성격이라고 보면서 관치성과 자치성을 엮격한 의미에서 대립적, 배태적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임
  - 아울러 지역경제의 불균등발전에 지방자치의 독자적 영역을 연 것은 시(島)마의 현대지방재정론(1951, 有斐閣)인데 여기서 고전적 지방자치에 근거한 독립세주의와 응익원칙에 의한 지방과세의 강화는 대중과세화의

현상을 가져와 농촌의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역경제의 불균등발전을 조장한다는 것임

- 그는 일본의 지방재정 현상을 고전적 지방자치와는 별개의 민주적 중앙집권을 주장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이러한 논쟁을 계기로 실증적 분석과 역사를 밝혀보려는 연구가 진전되었음

- 이들은 중앙 각성(省)의 자료에 의한 제도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구체적인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음

○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 지방재정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본에 고유한 지방재정제도를 확립하고, 특히 지방재정제도의 원형(paradigm)에 대한 추구를 계속해 왔는데 이는 이후의 지방재정제도 설계의 틀로 활용되어 오고 있음



# 제2장

## 총론: 시간적 범위 및 시대구분

제1절 논의된 내용

제2절 총론: 시간적 범위 및 시대구분



## 제2장

## 총론: 시간적 범위 및 시대구분

### 제1절 논의된 내용

- 논의된 내용으로는 먼저 시대를 크게 구분하고(대시대), 소시대로 세분화 하되 시대구분별로 먼저 시대상황(지방재정환경)을 총론으로 기술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재정사는 지방세와 같이 개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큰 틀에서 지방자치제도 발달을 고려한 시기구분이 필요함
- 지방재정사의 시간적 범위를 확정하는데는 현 지방재정제도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시대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지방재정사를 인식하는 태도 내지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 우리나라의 역사는 주로 왕조중심의 구분론이 대세인데, 예를 들어 서울시 재정사는 시장별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음
- 시기구분에 있어서 시대별, 정권별, 제도변화 시기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재정사가 보다 명확히 구분되고 제도나 운용상황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중요함
- 조선시대 등 근대이전의 자료는 언급이 필요한 경우 부록이나 참고자료로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자료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봄
- 정권별(예시)
  - 이승만정부

- 박정희정부
- 김영삼정부
- 노무현, 이명박정부 등
- \* 전상경(2007)은 정권별로 주요 지방재정 시책을 기술하고 있음
- 현재 제시되고 있는 시대 구분은 중앙의 시각일 가능성이 있어 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지방재정제도의 큰 제도변화를 기준으로 시대구분(예시)
  - 지방교부세 도입
  - 지방양여금 폐지
  - 세제개편 등
- 시대 구분을 중앙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지방의 입장에서 시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3공화국 이후를 보면 중앙집권시대, 지방의회 부활시대, 민선 지방자치시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민선지방자치시대는 제1대부터 6대까지 구분할 수 있음
  - 제1, 2 공화국시절의 지방재정도 지방자치의 제도적 변화에 따라 구분하여 방법이 있을 것임
- 차병권(1984) ‘한국지방재정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는 해방이후 1950년대, 그리고 1960-1970년대의 개발시대, 1980년대 이후로 구분하고 있음
- 시대의 특징을 표현한 key word가 필요함
  - 지방자치와 관련된 표현으로 그대로 쓸 것인지, 지방재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재구성할 것인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시대의 특징을 표현할 주제어를 사용하여 시대의 주요한 특징을 나타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시대를 일제강점하의 지방재정 형성기, 민주적 지방재정 실험기, 중앙집권적 지방재정 운용기, 지방분권적 지방재정 발전기로 구분하여 각 시대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기술하고자 함



## 제2절 총론: 시간적 범위 및 시대구분

### 1. 일제강점하의 지방재정 형성기

- 지방재정사 흐름을 보았을 때, 일제의 사실상 지배기인 구한말에서 일제강점하의 지방재정제도나 운영 현상은 근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지방재정제도나 운영 형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이는 지방재정사 측면에서 이전의 조선시대 등 왕조시대와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부끄러운 역사로 부정하고 싶지만, 근대에 이어져 현대에까지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실로 객관적인 평가는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사를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일제강점기의 지방재정제도가 근대적 지방재정의 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에 근대적인 요소가 도입된 것은 地方費法이 실시된 융희 3년(1909) 이후의 일임
  - 물론 그보다 앞서 광무 10년(1906)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지방재정법규라고 볼 수 있는 지방세규칙이 반포되었으나 동규칙은 실시를 보지 못하고 융희 3년에 의하여 府·道재정이 새로이 형성되었던 것임 (부는 한성부를 말함)
  - 이 제도는 지방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관청으로 하여금 부담케하여 한성부 및 각 도에 독립적 재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통감통치하에 타율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체제상 일본이 1878년 공포한 ‘지방세규칙’과 1890년 실시한 부현제의 형식과 내용을 모방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 시기는 중앙집권적 관료지배체제의 강화를 지향하는 지방재정의 조직화를 꾀한 시기로 수탈위주의 지방재정형성기라 할 수 있음

- 일제초기에 지방비법이 계속 유효하였으나 총독부의 설치에 따라 지방비 부과금의 과목, 과율 및 기타 부과에 관한 필요사항의 인가권은 총독이 정리하게 되었음
  - 이후 1914-1919년에 한국의 재정독립계획의 시행과 함께 1914년에 부제를, 1917년에 면제를 실시하여 부재정 및 면재정을 실시하였음
  - 1920년에 행하여진 소위 제1차 지방제도개정에 따라 지방비법을 폐지하고 지방비령을 공포하는 한편 부제 및 면제에 대해서도 개정을 가하였으나 제도상 크게 변화한 것은 없었음
- 1920년대에 부를 제외한 도와 면에 자문기관이 설치되고, 1931년 부와 면에, 1933년 도에 도회가 설치되어 지방단체에 의결기관이 생겼으나 의결권은 제한되었는데 총독은 지방의회의 해산권을 보유하고, 자치단체장은 정회를 명할 수 있었음
  - 일제 강점기는 총독부 통치권력을 지방에 침투시키기 위해 1914년에서 1943년까지 중앙세출규모는 30배 증가하였으나 지방세출규모는 63배 팽창하였음
  - 단체별 신장도에 있어서도 동기간 중 도비는 104배, 읍면비는 약 38배 증가하여 도의 역할이 강화되었음
- 도재정의 비약적인 팽창은 부·읍·면 등 하부단체에 대한 감독자의 비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중앙집권적 기조를 반영하는 것임
  - 1930년대 말에는 전쟁경제가 강화되면서 전쟁에 관한 위임사무를 지방 부담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단체의 증세가 불가피했으며, 단체 간 부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1940년 지방재정보급금제도가 창설되었음
- 일제하의 지방재정구조와 운용방식에 있어서 주요한 내용으로 중요시되어야 할 몇몇 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총독부와 도, 읍면간의 재정관계: 도재정의 우월적 지배구조
  - 도와 읍·면간의 재원배분: 지방세체계
  - 공공사업, 영선사업의 내용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분리: 일본은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일원적으로 운영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이유
- 경찰재정의 운영형태

## 2. 민주적 지방재정 실험기

### ○ 1945년부터 정부수립시

- 해방이후는 경제적으로 공업생산의 침체로 인한 공산품의 부족과 농업생산의 부진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재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극도의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된 시기임
- 해방 후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이식하였던 미군정은 지방재정제도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시도를 시도하였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였음
- 미군정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각종 제도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일제하에 기형적으로 성장한 지방제도에 대해서 민주적 지방자치의 도입을 위한 제도개혁을 시도하였음
- 1946년 3월 관제적인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 및 학교협의회를 해산하고 11월에는 주민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도 및 그 밖의 지방의 중요한 官公吏와 각급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 기능을 규정 한 군정법령 제126호를 공포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자치적 지방행정재정의 운영은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실질적인 중앙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
- 미군정의 지방재정 개편시안의 주요 내용 파악 및 미군정 개편안이 실시되지 못한 이유 등 검토

### ○ 1948년부터 1960년(법제정과 4.19)

- 미군정, 분단된 상태의 정부수립, 한국전쟁 발발 등 연이은 사회적 상황이 경제적으로 심한 혼란을 야기함
- 남북분단으로 반쪽짜리 산업기반이라는 제약 하에서 경제를 재건해야 하는 시기로 미군정의 원조물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음

- 경제재건사업이 미국원조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1957년을 정점으로 원조는 줄어들고 민족자본을 축적할 기회인 토지개혁과 귀속재산의 처분도 유명무실한 결과를 가져왔고 저축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었음
- 이 시기의 지방재정제도의 개편은 우리나라 정부에 계승되었으나 6.25동란과 1950년대의 제반 사정은 지방자치의 정치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던 반면에 지방자치행정의 기반이 되는 지방재정이나 지방재정제도의 개선에 대하여는 비교적 소극적인 관심만을 표명케 하였음
- 정부수립이후 제헌헌법에 의해 지방자치제가 보장되어 종전의 도, 부, 읍, 면은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되고 구체적인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6.25에 의해 지방의회의 구성이 연기되어 실질적으로 1952년 한수이남에서 지방총선거가 실시되었음
  - 1956년에는 지방자치법 제2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56년 8월에 기초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음
  - 이후 1956년 제4차 법개정 이후 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 되었으나 모두 임명제로 바뀌고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부활되었음
- 민주당정부에서는 내각제에 기초한 분권화를 추구하여 1960년 지방자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주민직선에 의해 12월 선출하였으나 1961년 5.16을 맞게 되었음
  - 지방자치법의 지방재무에 관한 규정
  - 지방재정의 구조 변화
  - 지방재정관련 운영 형태: 일제하의 지방재정운영형태와의 유사점과 상이한 점
  - 1960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재무에 관한 규정

### 3. 중앙집권적 지방재정 운용기

- 1961년 지방자치 금지(5.16)
  - 1961년 지방세법 전면개정
- 1963년 지방재정법 시행
  - 1967년 국세부가세 시행
  - 1968년 지방교부세 재편
- 기타(10월유신, 1987년 등)
  - 1990년까지 종합토지세
- 이 시기에 정부에서는 원조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여 자립경제를 위한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재정투융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산업 전반을 주도하는 재정적 수단을 동원하고자 했음
  - 이같은 재정적 수단인 재정투융자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시켰는데, 1966년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수출증대를 통한 대외지향적 공업화전략을 추진하였음
  - 1973-1980년대 후반 시기는 제1,2차 석유파동 영향을 받은 시기로 한국경제는 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였음
  - 그러나 이시기부터 지역간 불균형, 환경문제, 소득격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되었음
- 이 시기의 한국경제는 고도성장과 정부주도형 경제로 특징 지워지는데, 시장의 기능보다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던 경제를 개방화와 무한경쟁의 시장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맡게 되었음
- 한편, 1961년 10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기초단체인 읍·면이 군으로 광역화되고 직할시라는 도시특례제도가 도입되었음
  - 1961년 지방교부세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62년 세제개혁에서 지방세로서 국세부가세가 채택되었음
  - 1963년에는 지방재정법과 보조금관리법이 제정되어 지방재정에 관한

법적 장치가 개선되었음

-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개발 년대에 이르러서는 개발정책에 부응하는 재정운용의 일환으로 지방재정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지방재정구조도 크게 변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듭된 제도개편을 통하여 지방행재정제도도 크게 개선·정비되었음
  - 그러나 개발 년대의 경제정책이 경제개발의 추진에 최우선 과제를 설정 하였던 관계상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지방분권보다 중앙집권화 경향이 강화되어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문제가 대두되었음
- 종합적으로 이 시기는 중앙집권적 지방재정 운용기라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추진되었음
  - 기초자치단체 광역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시와 읍면을 통할하는 군의 설치
  - 직할시라는 도시특례제도의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 시·도의 교육위원회와 군의 교육구 폐지와 부활: 1971년 중학교무시협제도의 시행과 의무교육기간의 연장에 따라 기존의 의무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교부세의 통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 1968년 지방교부세제도의 재편
  - 1972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제도 및 특별교부세 폐지
  - 1976년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제의 변화
  - 1984년 지방세법 개정, 1985년 담배소비세 도입

#### 4. 지방분권적 지방재정 발전기

- 1991년 지방자치 부활
  - 국무총리실 지방자치기획단 운영
-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와 2000년 지방분권 추진
- 1985년 3월 ‘지방자치실시연구위원회’의 출범과 공청회 개최, 1989년 12월 지방자치법 제8차 개정, 1990년 12월 제9차 개정을 거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음
  - 1991년 3월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가, 동년 6월 광역자치단체 의원선거가,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음
  - 이후 양적인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팽창과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 등이 이뤄졌으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의 명확화와 이에 따른 재원의 재배분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은 1949년에 제정된 후 1988년 대폭 개정되기 전에 일곱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재무에 관한 장’은 거의 바뀌지 않았음
  - 1961년에 제정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서 비로소 예산의 확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을 정도이며 재무에 관한 장이 오늘날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임
  - 1988년 이전에 재무에 관한 장으로서 ‘재산·공공시설과 수입·지출’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두 개의 절을 두고 제9장 보칙 160조에는 가 예산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음
  - 1988년 대폭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재무에 관한 사항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예산 및 결산,’ ‘수입 및 지출,’ ‘재산 및 공공시설,’ ‘보칙’ 등 다섯 개 절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재무에 관한 조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1963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이전의 지방재정의 운용은 국가의 예산회계법령을 준용하였음

- 1964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령에 대한 세칙으로 재무회계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은 1988년, 1991년, 1994년의 소폭적인 개정을 거쳐 2005년에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졌음
  - 이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네 개의 법으로 분할되었음
  - 국세와 지방세,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물론 지방재정관리제도에 새로운 제도 도입이 이루어졌는데, 지방재정운영의 문제점이 나타나면 문제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도입에 의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도식적 해법이 반복되고 있음
  - 아울러 지방재정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나 재정관리체계의 개편이 아닌 감사나 사법적 수단을 동원, 관련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의 도덕적 해이의 방지에 주력하는 양상이 나타나곤 하였음
- 참고로 일본은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을 제정하고 동법에 따라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으로 분권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둠
- 우리나라는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함
  -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라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분권화를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며,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함
  -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는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이에 따른 재원이양 등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유인하였음





# 제3장

## 각론: 지방재정제도 기술내용 및 방법

제1절 논의된 내용

제2절 각론: 구체적 집필내용 및 방법



## 제3장

## 각론: 지방재정제도 기술내용 및 방법

## 제1절 논의된 내용

## 1. 기술내용과 방향

- 각 시기별로 지방재정사를 큰 틀에서 먼저 총괄적으로 정리한 뒤 각론으로 정리
  - 지방재정사는 제도뿐만 아니라 당시의 재정현상 및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의 개별 다양한 제도를 몇 가지 유형화로 구분 필요
  - 제도 및 운용에 대한 시사점 및 평가는 각 개별제도를 기술할 때, 제도 및 정책의 변화 배경, 목적, 경위, 성과, 시사점 등을 기술
- 역사를 움직이는 사회적 세력으로서의 인간 집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나, 지방재정사는 객관화시켜서 기술해야 하므로 인물평이나 관련 인물에 대한 판단이나 언급은 무리임
  - 인물론은 지방재정제도의 형성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회속기록을 참고하거나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된 인물에 대해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고 사적인 의미도 있음
  - 하지만 인물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인터뷰 당사자의 의견을 참조하는 경우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스(box)나 부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함
- 외국 지방재정사에 대한 검토는 참고 사항으로 처리
  - 제도형성에 영향을 미친 외국의 제도나 이론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일본과 미국 제도가 이에 해당됨

- 한국 제도나 정책에 대해 관련성이 있거나 제도 도입시 외국사례를 고려한 경우는 해당 외국 지방제도를 박스(box)로 정리하는 것으로 함
- 예를 들어, 일제하의 지방재정이 일본의 지방재정을 원용한 측면과 해방 이후 미국의 경제원조와 특히 6.25 전쟁 후의 대한 부흥원조계획 추진이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과 피원조국인 한국 정부의 행정체계의 후진성과 불합리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한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행정기술(교육) 원조를 기술하는 것 등
- 지방재정 주요 통계 수록 및 DB구축은 본 과업의 예산 및 기간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 검토 필요
  - 통계 정리 및 DB구축은 방대한 작업으로 별도의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사는 연구자들의 단편적인 견해가 아닌 지방재정제도나 운용현황에 대한 객관적 기술과 자료를 집계한 방대한 자료집으로, 개별 연구자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관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필의 원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집필자간의 워크샵과 교육을 통해 지방재정사 발간의 목적과 집필 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편향적 시각에 의해 지방재정사를 집필하는 경우로 의견이 다른 내용을 박스(box)나 부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기존 연구는 주로 행정부에서 편찬한 것으로 제도, 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대기적인 방식으로 통사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제도적 관점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난 법과 주요한 제도 변화를 정리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지방재정제도가 형성된 시대적 상황이 어떠한가, 지방재정이 지역사회나 국가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예를 들면 재정의 세 가지 기능으로 자원배분, 경제안정, 소득재분배 중 지방재정의 주된 기능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원배분에 집중되어 있

는지와 여타 기능이 시대에 따라 어떠한 비중이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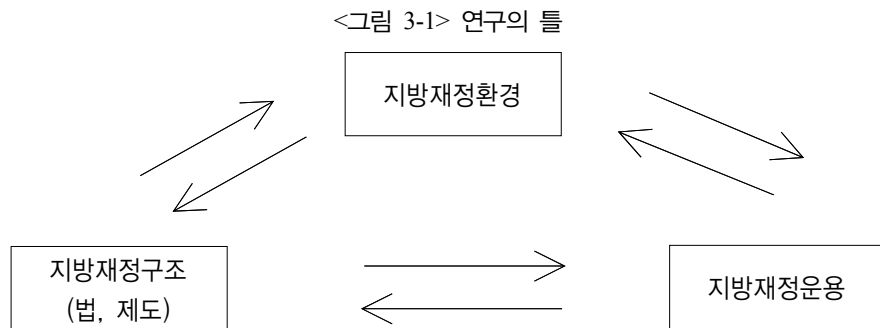
- 즉, 정부기능의 변화와 지방재정의 역할을 시대적으로 고찰하고자 함
-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 필요
  - 예를 들어 현재 중앙과 지방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기초연금 등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갈등 문제 등
  - 이러한 주요 사안에 대한 발굴을 위하여 광범위한 자료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의 틀

- 집필자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접근방법의 제시가 필요함
- 지방재정의 경우 중앙이 어느 정도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었는가 하는 집권-분권의 이원론적인 시각에서 연구되어왔는데,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으로 fiscal federalism도 한 예라 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고전적 지방자치와 이와는 별개의 민주적 중앙집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재정을 보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역사를 파악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이창세는 ‘한국재정의 근대화과정’을 통해 조선시대부터 제3공화국 이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재정의 근대화과정을 통해서 한국 정치·행정의 근대화를 조망하고 있음
  - 김명윤의 일제하부터 1965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변화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한국재정의 구조’는 재정제도나 재정측면의 현상적인 성과변수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나 재정과 경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정치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한성은 ‘한국재정사’에서 기존 연구는 특정 연구자의 일관된 관점에

바탕을 두고 저술된 역사서라기보다 자료집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천과정과 그에 상응한 재정의 구조적 변천 과정을 시장기능과 그에 상응하는 재정기능의 변화라는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시대별로 경제적 상황과 재정의 구조와 역할로 구분하여 기술함

- 제도나 법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킬 것인가?
  - 한국 조세정책 50년(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구의 어떤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지 원칙에 관한 합의가 필요함
  - 만약 서로 다른 시각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이러한 평가가 어렵다면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단순히 찬반양론을 기술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사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체계/framework)로 <그림 3-1>과 같이 지방재정구조를 서술하는데 이는 지방재정구조(법, 제도)를 지방재정환경과 지방재정운동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것임



- 지방재정환경에 대한 기술: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
- 지방재정구조(법, 제도)를 주로 다루나, 시대별로 지방재정규모(세입,

세출 등) 등 주요한 특징이 무엇이며, 지방재정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 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재정운용의 현황과 특징을 기술함

### 3. 기존 지방재정 저서 분석

- 목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대적 구분과 내용분류에서의 시사점 도출
- 한국조세정책 50년
  -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로 한 권의 정책평가 논문집과 다섯 권의 세목별 자료집으로 총 여섯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I권 : 조세정책의 평가  
 제1편 시대별 조세정책  
 제2편 세목별 조세정책  
 제II권 : 총괄자료집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제세감면규제법  
 제III권 : 소득세 자료집  
 제IV권: 법인세 자료집  
 제V권 : 소비과제 자료집  
 제VI권 : 재산과세 자료집

\* 각 자료집은 세법개정요약, 세법개정내용, 관련 통계자료 순서로 나열되어 있음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60년 1948-2008

제1권 배경과 맥락  
 - 역사적·환경적 맥락  
 제2권 국정관리  
 제3권 공공정책  
 - 분야별 정책과 행정관리  
 제4권 사건과 인물  
 연표,  
 역대 정부 요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한국지방자치·행정 50년사 - 1948~1997.

제1부 지방행정제도

- 대한민국정부 수립전
- 지방자치관계법
- 지방행정의 구조와 기능
- 지방선거
-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공무원
- 지방재정제도: 개관, 예산회계, 지방재정조정,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제도, 세외수입,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관리
- \* 정부수립직후의 지방재정법규: 지방자치법령, 도 재무조례(회계조례)
- 현행 지방재정법규: 1962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재정법

○ 2014년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1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집필중인 지방세60년사는 참고자료로써 의의가 있으므로 부록으로 자세히 수록하고 있음

○ 일본의 지방재정사

- 일본: 사료, 내각(총리) 정권별로 구분하고 있음

○ 지방재정 저서에서 지방재정의 분야별 체계는 <표 3-1>과 같이 요약 정리해 볼 수 있음

- 지방예산제도는 모든 저서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제도, 참여자, 예산절차가 주요한 내용임
- 지방정부의 세출도 모두 다루고 있음
- 지방세입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대다수 지방양여금을 언급하고 있음
- 지방재정관리제도에서는 학자에 따라 상이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중기재정계획제도는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지방재정위기제도와 주민참여예산 등 최근에 도입된 제도는 일부 저서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음



- 지방재정력 강화방안도 일부 저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투융자심사도 일부 저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지방공기업은 라휘문, 조창현, 심정근외에서 다루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은 심정근, 전상경에서만 다루고 있음
  - 회계제도, 구매·계약제도, 자금관리 등도 일부 저서에서 다루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공유재산 및 시설관리, 물품관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음
- \* 대부분의 저서는 지방재정제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크지 않으나 전상경(2007)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지방재정 이론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으며, 심정근외(2000)는 다수의 학자가 집필에 참여하고 있음

&lt;표 3-1&gt; 지방재정의 분야별 구분

		라휘문 (2014)	조창현 (1996)	손희준 외 (2002)	심정근 (2000)	김홍래 (2005)	김형직 (1997)	전상경 (2007)	김종희 (2002)
지방예산제도		o	o	o	o	o	o	△ <sup>1)</sup>	o
지방세출		o	o	o	o	o	o	o	o
지방 세 입	지방세	o	o	o	o	o	o	o	o
	지방세외수입	o	o	o	o	o	o	o	o
	지방교부세	o	o	o	o	o	o	o	o
	보조금	o	o	o	o	o	o	o	o
	지방양여금	x	o	o	o	o	o	o	x
	지방채	o	o	o	o	o	o	o	o
지방 재 정 관 리 제 도	중기재정계획제도	o <sup>2)</sup>	△ <sup>3)</sup>	o	o <sup>4)</sup>	o <sup>5)</sup>	o <sup>6)</sup>	o <sup>7)</sup>	o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o	x	x	x		x	x	x
	지방재정력 강화방안	x	o	△ <sup>8)</sup>	o <sup>9)</sup>		x	x	x
	투융자심사제도	o	x	o	o <sup>10)</sup>	o	x	x	o
	회계제도	o <sup>11)</sup>	o <sup>12)</sup>	o	o	x	o	o	x
	지방재정분석 진단제도	o	x	o	x	o <sup>13)</sup>	x	△ <sup>14)</sup>	o
	주민참여예산제도	o	x	x		x	x	x	x
지방공기업	o	o	△ <sup>15)</sup>	o	x	x	x	x	
자금관리	x	x	o	o	o	x	o	x	
지방구매	x	o	x	o	△ <sup>16)</sup>	x	x	o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재정	x	x	x	o <sup>17)</sup>	x	x	o	x	

o 다루고 있음, △ 간단하게 다룸, x 다루고 있지 않음

## 제2절 각론: 구체적 집필내용 및 방법

### 1. 총괄

- 각 시대구분별
  - 정치경제적 상황
  - 국가 및 지방재정 상황
- 지방분권 차원에서 초점을 맞추어 전체적인 정부간 재정관계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변화를 기술
  - 예를 들어, 지방4단체, 총리실 지방비부담심의위원회 등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과 요인들에 대해 기술

### 2. 정부간 재정관계 및 재정조정제도

- 정부간 재정관계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기능배분)을 정리
- 중앙과 지방의 재정통제관계 정리
- 총괄적 세입 및 세출구조에 있어서도 양적배분과 질적 배분 검토

- 1) 제2장 재정연방주의와 지방재정 부분에서 다루고 있음.
- 2) 제12장 3절 지방재정관리제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로 부분적으로 다룸
- 3) 제4편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 4) 제5장 지방재정조정제도
- 5) 제6장 지방재정관리제도에서 사전적/ 사후적 재정관리제도로 나눠서 다룸
- 6) 제7장에서 지방재정 과제, 제4절에서는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선으로 다룸.
- 7) 제13장 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으로 다룸.
- 8) 제14장 지방재정진단과 재정분석
- 9) 제6편 지방재정의 주요과제에서 다루고 있음.
- 10) 제3장 5절 투자전략에서 다루고 있음.
- 11) 제11장 3절 복식부기회계로 다루고 있음.
- 12) 제3장 3절 지방예산의 회계검사로 다룸.
- 13) 제1편 제6장 4절 1. 지방재정분석 진단제도로 다룸.
- 14) 제5편 제3절 II. 지방재정규율로서의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지방재정으로 다루고 있음.
- 15) 제10장에서 지방공공서비스의 경영화
- 16) 제2편 제10장 재산
- 17) 제6편 제4장 지방교육재정에서 다룸

- 각 시대별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 즉 지방재정관련법 및 제도의 형성메카니즘, 자원조달의 비중,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 등을 서술하며 이것이 지방재정운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함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및 변화를 기술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비중과 특징을 기술

### 1) 중앙과 지방간의 정부간 재정관계

- 정부간 역할 및 기능배분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 사무이양 등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등 정부간 재정관계 전체 변화에 대한 정리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총괄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규모
  - 순계 및 총계
  - 세입과 세출구조 등
- 국세대 지방세 변화
  - 국세대 지방세 구조
  - 국세대 지방세 규모
- 회계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 2) 지방교부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일본도 지방교부세제도를 통해 재원의 균형화 도모 및 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장해주고 있음
  - '51년 임시지방분여세 제도로 출발, '59년 지방재정조정교부금 제도 운영
    - ※ 교부세 법정률 인상 : 15%('00) → 19.13%('05) → 19.24%('06)
  - 자치단체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함
    - 내국세의 19.24%로 법정화하여 지방재원을 총액으로 보장
    - 자치단체 상호간 재정력격차 완화 및 세원배분 불균형 보완
  - 지방교부세
    - 총괄
    - 보통교부세
- \* 1951년 이후 지방교부세제도의 변화는 <표 3-2>와 같음

<표 3-2> 지방교부세 제도의 변화

○ 1951년	: 임시지방분여세제도로 출발
	- 국세 중 특정세목(지세등)의 일정율 교부 (34.68%)
○ 1959년	: 지방재정조정교부금제도 운영
	- 국세 중 특정세목(영업세등)의 일정율 교부 (40%)
○ 1962년	: 지방교부세제도 운영
	- 국세 중 특정세목(영업세·주세 등)의 일정율 교부(40%)
○ 1969년	: 내국세 총액의 17.6%(보통16%, 특별1.6%) 법정률 교부
○ '73~'82년	: “8. 3 조치”로 법정률 유보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대통령 긴급명령”
○ '83년 이후	: “8. 3 조치” 폐지로 법정률 부활
	- 내국세 총액의 13.27% 법정률 교부
	- 증액교부금제도 신설
○ 2000년	: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
	- 내국세 총액의 13.27% → 15%
○ 2005년	: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
	- 내국세 총액의 15% → 19.13%
	- 증액교부금·지방양여금제도 폐지
	- 분권교부세 신설(내국세의 0.83%)
○ 2006년	: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
	- 내국세 총액의 19.13% → 19.24%
	- 분권교부세를 상향조정 0.83%→0.94%
○ 2014년	: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간 재원 조정
	- 보통교부세 96% → 97%, 특별교부세 4% → 3%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 자료, 2014

- 특별교부세
  -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 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
  -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 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분권교부세
  - 재정분권 차원에서 국고보조 86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 ('05년)
  - '10년 중복사업 등 통·폐합(149→90개), '13년 3개 폐지(90개→87개), '14년 사업조정(87개→86개)
- 부동산교부세
  -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으로 종합 부동산세(국세) 도입
    - \* 기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부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자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동산교부세 도입('05.12)
    - \* 재산세 및 거래세 감소분 보전과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원확충
- 운영체계 및 산정방식
  - 자원 및 운영체계
  - 기준재정수요 및 기준재정수입액 등 산정항목
  - 인센티브 등

### 3)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총괄

- 법규 및 운용 등
- 운영체계 및 산정방식
  - 기준보조율
  - 지방비부담 등

#### 4) 광역과 기초간의 재정조정제도

- 시도비보조금
  - 총괄
  - 단체별 등
- 조정교부금
  - 「지방자치법」 제173조(대도시 행정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자치구 재원조정)에 근거하되, 특별·광역시 조례(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교부율, 산정방법, 교부시기 등) 규정·운영('88 도입)
    - 재원 및 운영체계
    - 배분방법
- 재정보전금
  - 광역시·도세를 시·군에 위임하여 징수할 때, 그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광역시·도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일정률\*을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제도에서 출발
  - 징수교부금 추이 : '76년 이전 도세 징수액의 10%, '76년~'89년 30%, '90년~'99년 30%(인구 50만 이상의 시 50%), '00년 이후 3%로 일원화
  - '징수교부금 제도'는 징수처리비가 과다 보전되고, 시·군 간의 재정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 징수교부율을 3%로 일원화(「지방세기본법」 시행령, '99.12.31)하고, 잔여재원\*을 시·군에 배분하는 '재정보전금' 제도 도입(「지방재정법」, '00.1.12.)

○ 재원 및 운영체계

- 배분방법

5) 광특 지역발전특별회계

○ 특별회계

- 총괄
- 제도변천 등

○ 운영체계 및 산정방식

- 편성체계
- 지원대상사업 등
- \* 폐지된 지방양여금제도 논의

### 3. 세입 및 세출

1) 지방세입 및 세수구조

○ 전체적인 지방세입 및 구조에 대한 총괄

- 지방재정 세입
- 지방세입 구조
- 자치단체별
- 회계별

○ 개별 지방세 구조

- 도세, 시군세, 광역시세, 자치구세 총괄
- 주민세
- 지방소비세
- 담배소비세 등
- 세외수입
- 자치단체별 등

2) 지방세출 및 세출구조

○ 현행 지방재정에 대한 총괄적 내용은 <표 3-3>과 같음

<표 3-3> 현행 지방재정 총괄적 내용

1	중앙과 지방의 통합재정수입 (예산+기금)	455.4조										
- 중앙 252.6조*(56%), 지방 201.8조(44%) ← 지자체 149조(33%), 지방교육 53조(11%) * 총수입 369.3조 - 이전재원 116.7조 (교부세 35.7, 보조금 40.1, 교육재정교부금 40.9)												
2	통합재정수입 * 한 회계연도의 순수한 재정수입 총수입 (예산+기금) - 보전수입 (지방채, 순세계잉여금 등)	148.9조										
- 회계별 : 일반 128.2조(86.1%), 특별 19.0조(12.8%), 기금 1.7조(1.1%)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20%;">지방세</th> <th style="width:20%;">세외수입</th> <th style="width:20%;">교부세</th> <th style="width:20%;">보조금</th> <th style="width:20%;">보전재원등</th> </tr> </thead> <tbody> <tr> <td>54.5조 (37%)</td> <td>21.9조 (15%)</td> <td>31.6조 (21%)</td> <td>37.7조 (25%)</td> <td>3.2조 (2%)</td> </tr> </tbody> </table>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보전재원등	54.5조 (37%)	21.9조 (15%)	31.6조 (21%)	37.7조 (25%)	3.2조 (2%)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보전재원등								
54.5조 (37%)	21.9조 (15%)	31.6조 (21%)	37.7조 (25%)	3.2조 (2%)								
* 교부세(35.7조/국가예산) : 보통 31.8조, 특별 1.0조, 분권 1.7조, 부동산 1.1조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7개(서울(자치구 포함),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 ※ 지자체 예산 : 163.6조 / 기금운용 : 11.1조 ('13말 조성액 16.1조)												
3	통합재정지출 * 한 회계연도의 순수한 재정지출 총지출 (예산+기금) - 보전지출 (지방채 상환, 예치금 등 제외)	158.7조										
① 사회복지(보건포함) 42.5조(26.9%) ② SOC 25.1조(15.8%) ③ 환경보호 15.9조(10.0%)												
4	국고보조사업 (예산비중)	61.1조 (37%) (※ '10년 46.7조, 33%)										
- 국고보조율 : ('91) 72% → ('10) 63% → ('14) 62% - 연평균증가율('10~'14) : 지방예산 4.0%, 국고보조금 6.6%, 대응지방비 7.4% * ('09~'14) : 지방예산 3.5%, 국고보조사업 7.9% (국비 7.2%, 대응지방비 8.9%)												
5	지방채무 ('13년말 잔액, 잠정)	28.6조										
- ('09) 25.6조 → ('10) 20.9조 → ('11) 28.2조 → ('12) 27.1조 → ('13) 28.6조*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누락분 2.4조 포함												
6	지방부채 ('12년 결산)	100.2조										
- 지자체 43.4조(채무 27.1+발생주의 부채 16.3) + 공사·공단 52.4조 + 출자·출연 4.4조												
7	지방공기업 수 ('14.1.1 기준)	394개										
- 직영기업 254개, 지방공사 60개, 지방공단 80개 / 자산174.2조 / 인력 7.4만명 -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13년말) : ('09) 58.2조→ ('11)67.8조→ ('13)73.9조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 자료, 2014.



## ○ 전체적인 지방세출 및 구조에 대한 총괄

- 지방재정 세출
- 지방세출 구조
- 회계별
- 자치단체별

## ○ 개별 세출항목별 및 구조

- 기능별, 세출구조별 총괄
- 인건비
- 물건비
- 담배소비세 등
- 자치단체별

## 3) 지방채

## ○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06.1.1부터 시행)

- 재정규모, 누적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한 총액한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
  - ※ 총액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채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일반재원의 일정비율(0~8%)로 설정,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치단체에 통보
- 지방재정의 건전성유지를 위해 총액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와 외채, 자치단체 조합의 지방채 발행은 사업별 승인제 유지

## ○ 지방채

- 총괄
- 단체별 등

## ○ 발행기준 등

- 발행기준
- 기타 관리방법 등

## 4. 예산 및 회계, 결산 및 회계감사

### 1) 예산편성

- 예산기준, 예산순기, 품목별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 등
- 사업예산제도(2008년 시행): 사업중심의 예산체계를 구축, 예산집행결과를 성과평가와 연계시키는 예산기법으로 성과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분류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 과정을 소홀히 하여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어 우선적으로 사업예산제도의 사업분류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사업원가가 도출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평가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상 자치단체의 실제 예산운용은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다행이 수년간의 시행기간을 거친 바 상당수 공무원들이 사업별 자료를 집계하는데 사업예산제도가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에 비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사업예산제도의 유용성이 제고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제도 시행 시범운영 기관 지정·운영('04)
  - 9개 시범기관 : 경기, 대전, 광주, 강원, 경기 부천, 대전 서구, 광주 동구, 강원 속초, 강원 평창
  - 시범기관 확대 운영 : 9개('04) → 50개 ('05.7) → 250개 단체('05.11)
- 사업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 근거 마련('05. 8)
    -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인력보강('05.10/ 500명)
- 사업 예산시행 재편, 실무매뉴얼 마련, 제도 교육 실시 등
  - 사업예산 편성 시범운영 매뉴얼 마련('06.12)

- 246개 전 자치단체 '07년 당초 예산서를 사업예산으로 시범 편성 및 지방의회에 제출('07. 3), 시범 편성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07. 4~7)
-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운영규정」 제정
  - '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행자부 훈령) 확정('07.7)
  - '09년도 사업운영규정과 과목구분·설정을 통합한 규정 마련('08.4)
- 「지방재정법」 개정('14.5.28공포, '16회계연도 예산편성시부터 적용)
  -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의무화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제 도입
- 성인지예산제도 등
  -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
  - 성인식(gender awareness) 및 성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하고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 양성평등 구현
  - '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性認知) 예산·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
  - 세입세출액을 표시한 예산서가 아니라 성 관련 예산사업별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집행실적 등을 작성한 보고서
    - ※ 국가는 '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시행중(국가재정법 §16, '07.1.1)
- 성인지예산제도 추진 현황
  -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11.3.8, 제36조의2, 제53조의2 신설) → '1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
  - '12회계연도 지자체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12.3~5월)
    - ※ 시범작성 매뉴얼 마련 및 시스템 개발('12.2) / 전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12.3)
  - 매회계연도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확정·통보 ('12.7월~)
    -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과 협의하고, 「지자체 예산편성

-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 확정된 매뉴얼을 반영하여 지자체에 통보
- 매 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확정·통보(7.31한)

## 2) 회계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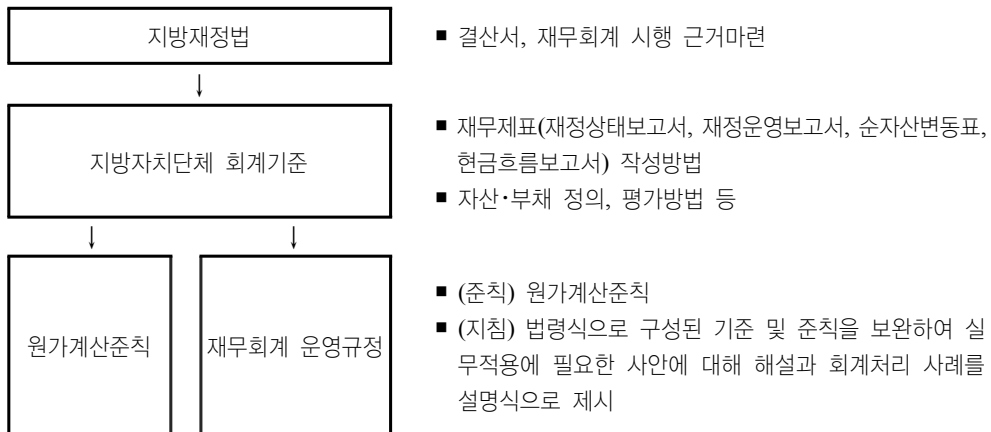
- 단식부기·현금주의와 복식부기·발생주의 운영
-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2007년 시행)의 도입으로 인해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재무제표가 산출되고 있으나 자치단체 전체의 거시적 정보만 산출되어 재무회계정보의 활용이 미흡함
  - 사업별 원가정보의 산출을 위한 준칙제정과 미국과 같이 사업에 대한 순원가(net cost)보고서가 필요함
- 복식부기회계제도 추진상황을 보면, 먼저 제도적 기반조성
  - 지방분권특별법(§11, '04.1)및 지방재정법(§53, '05.8) 근거마련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부령, '06.10), 재무회계 운영규정(훈령, '06.11), 재무보고서 검토기준(훈령, '07.11) 등 제정
- 단계적 확산을 통한 제도시행 및 전산시스템 개발
  - '99년(2개) → '03년(9개) → '04년(63개) → '05년(246개) → '07년 시행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보급 운영('08.1)
-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 「회계기준심의위원회」 구성·운영('03.5~'08.6)
    - ※ 2009~2010 재무회계선진화위원회를 정책자문위(지방재정분과) 소위원회로 운영
  - 지방의회 의원, 결산담당자, 공인회계사 등 교육('06~'11년, 약 19만여명)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자료전환 및 구축 지원
  -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자산연계 ('08.5~12)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제정('10.12)

- 사업별로 원가를 계산하여 성과관리,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1.5)
  - 원가계산준칙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 작성 근거 마련
- 회계연도 원가회계 시범운영 : '11년(11개)→ '12년(244개 전 자치단체)
  - 원가계산준칙 적용, 사업순원가를 표시하는 재정운영보고서 작성 등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 개정 및 전 자치단체 원가회계제도 전면 시행('13.1)
  - 사업관리방법 등

### 3) 결산 및 회계감사

-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 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 보고서)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재무보고서)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근거가 되는 법규 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3-2>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법령체계



- 그 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에서도 각 법령이 요구하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구매 및 계약
  - 구매제도 및 운영현황
  - 계약제도 및 운영현황
- '06년부터 「지방계약법」 시행 후 지방계약의 규모 지속 증대
  - 지방계약은 年 28조원('13년) 규모로 국가계약(12조원)의 2.3배 수준
    - ※ 기관(1만2천개) : 지자체, 교육청(공립학교), 지방공기업 등 / 건설업체(5만6천개)
    - ※ 계약민원 신문고 처리현황 : '10년 6,723건, '11년 7,861건, '12년 8,778건, '13년 9,349건
- 지방계약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등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추진('10년~)
- 기금
  - 기금 총괄
  - 자치단체별 기금운영 현황
- 기금제도개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설치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지방기금법 주요내용
  - 개별법률에 지방기금 설치 제한(행자부와 사전협의)
  -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기금일몰제 도입
  - 자치단체 자율의 기금 성과분석제도 운영(행자부 확인후 개선권고)
  - 지역상생발전기금, 통합관리기금 도입 등 여유자금 활용방안 마련

## 5. 지방재정관리제도

### 1)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 중기재정계획제도(1988년 법제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원조달이 주로 중앙정부의 보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원추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업과 유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체계적인 사업기획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운영 도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연혁 및 근거규정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88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 후 행자부장관에게 제출(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근거 마련('91년) : 법 제33조 5항
- 연동화계획으로 운영('93년 이후)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95년 이후)
  - 행자부장관은 각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국무회의에 보고(법 제33조제3항)
  - ※ 국가재정운용계획
    - 정부는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 국회 제출(국가재정법 제7조)
    - 각 부처는 매년 1.31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 기획재정부 제출(국가재정법 제28조)

- 계획수립 주체 : 전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 후 행자부에 제출
  -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국무회의 보고
- 주요 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의 목표·전략 등과 관련한 중기재정운영의 기본 방향 설정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단위사업별 연차 투자계획 등
- 2014~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일정
  - 중기지방계획 수립기준 확정·지자체 통보 : '14. 7월
  - 자치단체별 중기지방계획 수립 : '14. 7~11월
  - 중기지방계획 지방의회 보고 및 행자부 제출 : '14. 11~12월
  - 전국 종합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 : '15. 1~'15. 3월

## 2)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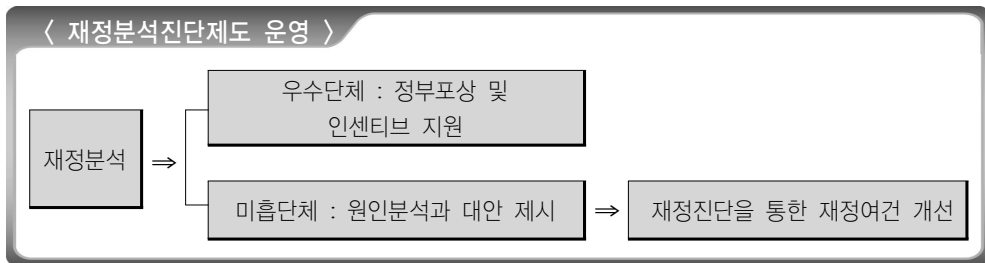
- 근거('94. 12 법 규정, 제도 도입·시행은 '92년부터)
  -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 사업심사대상의 제한성, 정확한 심사의 미비, 심사에 대한 메타평가시스템 부재 등을 들 수 있음
- 총괄
  - 연혁
  - 단체별 등
- 대상사업 및 운영방법
  - 대상사업
  - 운영방법 등



### 3) 자치단체 재정분석제도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54조~제57조, 동법 시행령 제64조~제66조
- 제도운영 개요
  -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정례적인 분석·공개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책임성 확보와 재정위기 사전예방

<그림 3-3> 재정분석진단 평가



\* 분석지표 : '98년 이후 10개 → '05년 30개 → '08년 16개 → '09년 15개 → '10~'12년 20개(참고지표 7개 별도) → '13년 25개(참고지표 11개 별도) → '14년 25개(참고지표 15개 별도)  
 ※ '98년 이후 251개 단체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특별교부세, 교부세 감액재원) 543.46억원 지원, 42개 단체 재정진단 실시

- 운영방식
  - 총괄
  - 인센티브
- 분석지표
  - 주지표
  - 참고지표

### 4) 주민참여예산제도

- 총괄
  - 주요 내용

○ 자치단체별 성과

5) 성과관리제도

○ 성과평가(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법제화) : 중앙정부는 성과 평가와 함께 재정사업자율평가가 시행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BSC등 정교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연례적 행사로 생각되며, BSC가 조직의 능력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가 아닌 구성원을 줄세우기 식의 성과평가에 치중, 원래의 목표가 변질되었음

- BSC는 조직, 성과평가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데 비해 공공서비스 전달은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간의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이들 간에 구별이 없이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과 매칭되지 않고 목표와 성과지표의 개발이 미흡하여 실제 사업 운영과 유리된 경우가 많음
- 성과관리는 향후 사업의 결산과 성과목표를 대비하는 예산 및 성과의 연계,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총괄

- 주요 내용

○ 자치단체별 성과

6) 공유재산 및 시설/물품관리

○ 공유재산:

- 재산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 물품관리: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 적극 활용 및 효율적 처리

## 7) 재정공시제도

- 지방재정법 제60조, 제60조의2
  - '94년「지방재정법」에 의해 도입된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를 대체·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06년에 ‘재정공시제도’ 도입
- 제도운영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홈페이지 등)
  - 자치단체 재정운영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 그간의 추진상황
  - 제도도입을 위한 자료조사, 의견수렴 및 확정('05.1~6월)
  - 시범운영기관 재정공시 실시('05.11.30)
    - ※ 시범운영기관 : 16개 시도 및 '04년도 재정운영 우수 6개 기초단체 (삼척시, 구미시, 양양군, 태안군, 인천중구, 광주북구)
  - 지자체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정('06.1~4월)
  - 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실시('06. 8월)
    - ※ 매년 8월말까지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실시
  - 재정고 홈페이지(지방재정공개)에 항목별·단체별 비교하여 통합공시('10.10월)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신규 항목 추가('11년 2개, '12년 3개)
    - ※ '11년 : 맞춤형복지, 중기지방재정계획, '12년: 사회복지분야, 출연·출자금, 보증채무현황
  -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등 정부 3.0 실현을 위한 지자체별 공시범위 확대('13~'14년)
    - ※ 지자체 재정공시 : ('12)25개 → ('14)46개, 통합공시 : ('12)9개 → ('14)18개 항목

## 6. 기타 지방재정 분야

### 1) 지방공기업

-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로서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임(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 ※ 지방공사·공단의 출자·출연 법인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이상 50%미만을 출자, 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함께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재단법인
- 총괄
  - 주요 내용
- 자치단체별 현황 분석
- 지방공기업평가원
  - 1992.2 내무부 소관 비영리재단법인 설립(민법제32조)
  - 1994.8 법인격 변경(재단법인→특수법인 : 지방공기업법)
  - 1998.8 정부출연기관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확정(국무회의)
  - 2000.1 특수법인→재단법인으로 다시 전환

- 2002.9 법인명칭 변경(한국자치경영협회→한국자치경영평가원)
- 2011.4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특수법인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3)

## 2) 지방교육재정

- 총괄
  - 주요 내용
- 자치단체별 현황

## 3) 소방재정

- 총괄
  - 주요 내용
- 자치단체별 현황

## 4) 자치경찰(제주특별자치도)

- 총괄
  -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 현황

# 7. 조직 및 인력 등 지방재정 관리기반 체계

## 1) 지방재정관련 조직 및 인력

- 중앙부처
  - '77. 6 내무부 「지방재정국」으로 발족(‘지방국’ 분국)
  - '88.12 내무부 「지방세제국」 분리·신설
  - '98. 7 행정자치부, 「지역재정세제국」으로 통합

- '05. 3 '본부-팀제' 실시로 「지방재정세제본부」로 변경
- '08. 2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방재정세제국」로 변경
- '13. 3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방재정세제실」 출범
- 지방자치단체
  - 관련 조직 : 예산 및 회계조직 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설립근거
  - 지방재정조직 및 주요 활동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 설립(1964. 9)
  -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명칭변경(1988. 6)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2003. 5)
- 한국지방세연구원
  - '07.12월 ~ '10.12월 : 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마련
  -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의무화, 자치단체 출연 비율 명시('10.12월)
  - '11.2.28 : 법인설립 등기, '11.4.20 : 개원식
- 출연연구원
  - (설립근거) 「지자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설립주체) 광역 지자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
  - (설립허가) 행정자치부장관
  - (설립현황) 총 18개 (광역별 16(세종시\* 제외), 여성정책 2(충남·경북))
  - (운영재원) 지자체 출연금\* 및 보조금, 연구용역 수익 등
  - \* ('14년 기준) 지자체 지원금 총 789억, 개소당 평균 44억 지원

## 2) 지방재정관련 전산시스템과 재정통계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 업무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며, '07. 1. 1. 도입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08. 1. 1. 도입한 사업예산제도를 모두 수용하는 시스템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별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추진
  - 자주재정권 존중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서버 구축
  - 16개 시·도 및 201개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이용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선진화 및 안정적 유지관리
  -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위택스) 운영을 통한 고품질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지방세시스템 추진경과
- 지방세 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 '04. 6
  - (1단계) 표준지방세시스템 구축 : '05. 1.~'06. 3.
  - 부산광역시 등 3개 시도, 7개 시군구 시범기관 선정 및 시스템 구축
  - (2단계) 표준지방세시스템 보급 : '06. 4.~'07. 12.
  - 12개시도, 200개 시군구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보급
  - (3단계) 통합지방세시스템 구축 및 보급 : '06. 4~'08. 12.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15개시도, 207개 자치단체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보급
-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 '07. 4 ~ 현재
- 16개시도, 202개 시군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 위택스 및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수납 등)은 전국 대상
- 지방재정관련 여타 시스템 현황 및 운영
- 재정통계







# 제4장

## 지방재정사 목차(가안)



## 제4장

## 지방재정사 목차(가안)

### 제1편 발간목적 및 필요성

1. 발간목적
2.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제2편 총론: 시대별 지방재정 발전사

#### I. 일제강점하의 지방재정의 형성기

1. 총론: 시대적 상황과 재정상황 개요
2. 일제 강점기의 지방재정구조와 운영

#### II. 민주적 지방재정 실험기

1. 총론: 시대적 상황과 재정상황 개요
2. 1945년부터 정부수립(미군정기)
3. 1948년부터 1960년

#### III. 중앙집권적 지방재정 운용기

1. 총론
2. 1961년 지방자치 금지(5.16), 1963년 지방재정법 시행
3. 1971년 유신개헌, 1988년 등

#### IV. 지방분권적 지방재정 발전기

1. 총론
2. 1991년 지방자치 부활
3.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
4. 2000년 지방분권 추진

#### 제3편 각론: 시대별 지방재정제도

##### I. 일제강점하의 지방재정 형성기

1. 총괄
2. 정부간 재정관계 및 재정조정제도
  - 1) 중앙과 지방간의 정부간 재정관계
  - 2) 국고보조금
  - 3) 광역과 기초간의 재정지원
3. 세입 및 세출
  - 1) 지방세 및 세입구조
  - 2) 지방세출 및 세출구조
  - 3) 지방채
4. 예산 및 회계, 결산 및 회계검사
  - 1) 예산편성
  - 2) 회계제도
  - 3) 결산 및 회계검사
  - 4) 구매 및 계약
5. 지방재정관리제도

- 6. 기타 지방재정분야
- 7. 조직 및 인력 등 지방재정 관리기반 체계

## II. 민주적 지방재정 실험기

- 1. 총괄
- 2. 정부간 재정관계 및 재정조정제도
  - 1) 중앙과 지방간의 정부간 재정관계
  - 2) 지방교부세
  - 3) 국고보조금
  - 4) 광역과 기초간의 재정지원
- 3. 세입 및 세출
  - 1) 지방세 및 세입구조
  - 2) 지방세출 및 세출구조
  - 3) 지방채
- 4. 예산 및 회계, 결산 및 회계검사
  - 1) 예산편성
  - 2) 회계제도
  - 3) 결산 및 회계검사
  - 4) 구매 및 계약
- 5. 지방재정관리제도
  - 1) 공유재산 및 시설관리
- 6. 기타 지방재정분야
  - 1) 지방공기업
  - 2) 지방교육재정
- 7. 조직 및 인력 등 지방재정 관리기반 체계

### Ⅲ. 중앙집권적 지방재정 운용기

1. 총괄
2. 정부간 재정관계 및 재정조정제도
  - 1) 중앙과 지방간의 정부간 재정관계
  - 2) 지방교부세
  - 3) 국고보조금
  - 4) 광역과 기초간의 재정조정제도
  - 5) 광특 지역발전특별회계
3. 세입 및 세출
  - 1) 지방세 및 세입구조
  - 2) 지방세출 및 세출구조
  - 3) 지방채
4. 예산 및 회계, 결산 및 회계검사
  - 1) 예산편성
  - 2) 회계제도
  - 3) 결산 및 회계검사
  - 4) 구매 및 계약
  - 5) 기금
5. 지방재정관리제도
  - 1)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 2) 공유재산 및 시설관리
6. 기타 지방재정분야
  - 1) 지방공기업
  - 2) 지방교육재정
7. 조직 및 인력 등 지방재정 관리기반 체계

#### Ⅳ. 지방분권적 지방재정 발전기

1. 총괄
2. 정부간 재정관계 및 재정조정제도
  - 1) 중앙과 지방간의 정부간 재정관계
  - 2) 지방교부세
  - 3) 국고보조금
  - 4) 광역과 기초간의 재정조정제도
  - 5) 광특 지역발전특별회계
3. 세입 및 세출
  - 1) 지방세 및 세입구조
  - 2) 지방세출 및 세출구조
  - 3) 지방채
4. 예산 및 회계, 결산 및 회계검사
  - 1) 예산편성
  - 2) 회계제도
  - 3) 결산 및 회계검사
  - 4) 구매 및 계약
  - 5) 기금
5. 지방재정관리제도
  - 1)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 2)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 3) 자치단체 재정분석제도
  - 4) 주민참여예산제도
  - 5) 성과관리제도
  - 6) 공유재산관리
6. 기타 지방재정분야

- 1) 지방공기업
  - 2) 지방교육재정
  - 3) 소방재정
  - 4) 자치경찰(제주특별자치도)
7. 조직 및 인력 등 지방재정 관리기반 체계

#### 제4편 추진방법 및 집필체계

##### 〈부록1〉 추진경과 및 후기

1. 추진경과
2. 후기

##### 〈부록2〉 주요 법령 및 지방재정 연혁

1. 법령
2. 지방재정 연혁
3. 참고문헌





# 제5장

## 집필체계 및 방법

제1절 집필체계 및 자료수집

제2절 주요 추진일정



## 제5장

## 집필체계 및 방법

## 제1절 집필체계 및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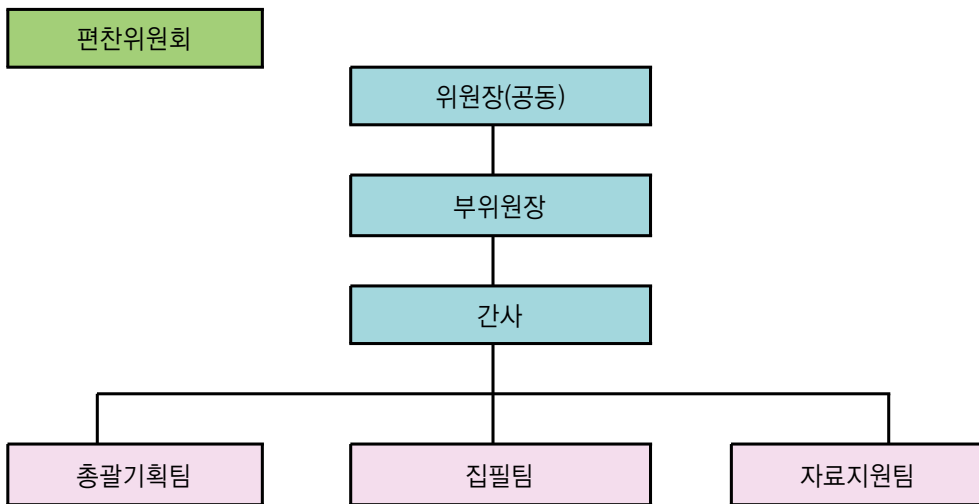
## 1. 집필체계

- 연구원에서 발간목적, 기간, 예산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집필 규모나 내용, 인력을 역산정 검토
  -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60년사는 4억원 예산과 2년간 걸쳐 집필 추진중
- 지방재정사 발간은 연구원과 행정자치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예산확보 측면에서도 연구원 사업으로 하기에는 수익성이 적어 예산 확보가 한계가 있고 인력에도 한계가 있음
  - 예산확보, 인력확보,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
- 연혁은 맨 뒤에 별도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고 추진경과 및 집필진도 부록으로 수록
- 집필기간은 연구원의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
  - 1년차는 시대사(통사)
  - 2년차는 각론
- 지방재정사 집필체계는 편찬위원회와 집필위원회 2개로 구분하여 운영 <그림 5-1> 참조
  - 편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공동) 지방행정연구원장·행정자치부 2차관, 부위원장 지방재정세제실장 및 외부 저명 학자나 연구원 1명, 간사는 재정정책과장 및 연구원 재정실장 1명, 실무위원은 각 시대별 연구책

임자로 구성

- 집필위원회는 위원장은 외부 및 연구원 연구책임자, 각 시대별 연구원, 교수, 공무원, 퇴직고위공무원 등

<그림 5-1> 집필 조직도



- 집필진 구성운영: 3개팀으로 구성
  - 총괄기획팀
  - 집필팀
  - 자료지원팀
- 팀별 구성 및 업무
  - 총괄팀은 과업책임자 및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지방재정사 발간 기획과 아이디어를 도출
  - 집필팀은 연구원, 외부전문가, 공무원, 퇴직한 당시 장관등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각 시대별로 인력을 구성(각 시대별 당시 장관 출신 활용하여 구술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여 보충자료로 활용)
  - 자료지원팀은 연구원의 자료실을 활용하여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통계지원

- 집필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연구원 인력은 물론 (사)한국지방재정학회에 지방재정사 별도 팀을 구성하여 지원을 받음
  - 집필위원장이 학회에 공문을 보내 추천받아 학회에 내부 분과를 만들어 각론 집필 지원
  - 필진구성이 중요: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상당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집필진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기타
  - 워크숍 : 집필에 앞서 전 집필진을 대상으로 지방재정사 발간의 의의와 목적, 체계, 집필원칙에 대한 교육과 토론의 기회를 가짐
  - 우수 집필진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

## 2. 자료수집

- 자료수집은 자치단체 담당자, 연구원, 학계인사 등으로 「지방재정사100년사 자료 지원팀」 구성·운영
- 자료수집대상\*은 국가기록원 이관자료, 지방자치단체·학계·행자부 보관자료, 외국의 지방세 관련자료, 지방세 원로 소장자료 및 경험담
  - \* 종류 : 문서, 서적, 비망기록, 사진자료, 인터뷰자료 등 총망라
  - \* 수집기간은 '15. 3월부터 3개월간 집중수집 후 집필 완료시까지 수시로 수집활동 지속추진
- 외국 자료의 확보·정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
- 수집자료 중 통계자료는 향후 지방재정운영 및 연구업무에 활용 될 수 있도록 e-Book 등 활용방안 강구

〈참고자료〉

- 인터뷰: 지방재정제도나 재정관리제도의 설계, 형성, 운영에 참여한 인물
- 연구원: 지방행정사
- 국가재정사
- 손병규: 조선시대 재정
- 지방세연구원: 지방세60년사
- 서울시: 서울시재정사
- 한국개발협회 KDA
- 국가기록원 DB
- 국회자료
- 각종 연구보고서
- 각종 용역보고서
- 지방재정지 세정지, 지방행정지 등 각종 학술지
-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 협의회 등의 보도자료
-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지방자치학회 등의 세미나 자료: 우리나라는 1996년 9월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창립되었음.

## 제2절 주요 추진일정

### 1. 2015년도: 1차년도

- 집필진 및 자료수집TF 구성: 1월
- 운영계획 및 워크샵: 1월 후반
- 자료수집: 1-3월, 이후 계속 진행
- 자료 취합 및 DB화: 10-11월
- 통사 집필시안에 대한 검토: 3월
- 통사 집필: 3-12월
- 통사 집필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보고: 12월

구 분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수집 회의(정기)	■											
자료 수집		■	■	■								
총사 집필팀 구성	■											
집필팀 운영계획 수립		■										
주요 연구주제 선정		■										
총사집필			■	■	■	■	■	■	■	■	■	■
집필추진 회의(정기)	■				■			■			■	
집필 중간보고							■					
총사 최종보고												■

## 2. 2016년도: 2차년도

- 집필진 및 자료수집TF 구성: 1월
- 운영계획 및 워크샵: 1월 후반
- 자료수집: 1-3월, 이후 계속 진행
- 자료 취합 및 DB화: 10-11월

- 각론 집필시안에 대한 검토: 3월
- 각론 집필: 3-12월
- 각론 집필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보고: 12월

구 분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수집 회의(정기)	■											
자료 수집	■	■	■	■								
각론 집필팀 구성	■											
집필팀 운영계획 수립		■										
주요 연구주제 선정		■										
각론집필			■	■	■	■	■	■	■	■	■	■
집필추진 회의(정기)	■			■			■			■		
집필 중간보고						■						
각론 최종보고												■



## 【참고문헌】

- KDI, 1990-1991. 한국재정 40년사  
 김명윤, 1966, 한국재정의 구조  
 김종희, 2002, 지방재정론, 법문사.  
 김철·편인범, 1965, 지방재정학요론, 해명출판사.  
 김형직, 1997, 지방재정의 이해, 그린북  
 김흥래, 2005,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라휘문, 2014, 지방재정론, 한국행정DB센터  
 손병규, 2008, 조선왕조재정시스템의 재발견, 역사비평사.  
 손희준외, 2002,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심정근 역편, 1997. 지방재정연구방법론. 한국지방재정학회.  
 심정근, 2000, 지방재정학, 박영사  
 심정근, 1981, 지방재정제도론. 법문사.  
 유한성, 2002, 한국재정사, 광고.  
 이창세, 1965, 한국재정의 근대화과정  
 장동희·최종연, 2007, 한국행정사의 이해, 대영문화사.  
 장병순, 1973, 한국세정사  
 재무부, 1979, 한국세제사  
 전상경, 2007,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조창현, 1996, 지방재정론, 박영사  
 차병권, 1984, 한국지방재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조세연구원, 1997, 한국조세정책 5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한국자치, 행정50년사.  
 한국행정연구원, 2009, 한국행정60년 1948-2008, 서울: 법문사.

## <부록> 지방세60년사(지방세연구원) 참고자료

### 집필진 구성

- (집필진) 경제사·재정·세제 관련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다양한 인재풀을 활용 「지방세 60년사 편찬(실무)위원회」에서 최적의 집필진 선정

### 자료 수집 및 정리

- 자료수집은 자치단체 담당자, 연구원, 학계인사 등으로 「지방세60년사 자료지원 TF팀」 구성·운영
  - － 수집대상\*은 국가기록원 이관자료, 지방자치단체·학계·안행부 보관자료, 외국의 지방세 관련자료, 지방세 원로 소장자료 및 경험담
  - \* 종류 : 문서, 서적, 비망기록, 사진자료, 인터뷰자료 등 총망라
  - － 수집기간은 '14. 8월부터 3개월간 집중수집 후 집필 완료시까지 수시로 수집활동 지속추진
- 외국 자료의 확보·정리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
- 수집자료 중 통계자료는 향후 지방세운영 및 연구업무에 활용 될 수 있도록 e-Book 등 활용방안 강구
  - ⇒ 자료수집을 위한 「실무지원 TF팀」 구성 [별첨]

## 목 차

### 제1편 : 지방세 시대사

- I. 서론(지방세제의 개관) ..... 1
  - 1. 지방세의 태동기(1948~1960년)의 지방세제
  - 2. 기반형성기(1961~1987년)의 지방세제
  - 3. 고도성장 및 전문화시기(1988~2008년)의 지방세제
  - 4. 2009년이후의 지방세제
- II. 지방세의 태동기 ..... 50
  - 1. 서론
    - 가. 시기구분
    - 나. 연구내용과 방법
  - 2. 정부수립기의 지방세제(1948~1950년)
    - 가. 지방세법제정의 배경
    - 나. 지방세법의 제정
  - 3. 전시 및 전후 재건기의 지방세제(1951~1960년)
    - 가. 지방세제 개편의 배경
    - 나. 1952년 광고세, 전화세의 신설
    - 나. 1955년의 면허세 이양 등 세제개편
  - 4. 정부수립 초기 지방세제의 특징과 평가
    - 가.
    - 나.
    - 다.

Ⅲ. 기반형성기의 지방세제 ..... 200

1. 서론

- 가. 시기구분
- 나. 연구내용과 방법

2. 경제개발기의 지방세제(1960~1976년)

- 가. 경제환경과 지방세제의 변화
- 나. 1960년 이전의 지방세 개편
- 다. 1961년 지방세법의 전면개정
- 라. 1966년 국세 부가세제도의 폐지

3. 경제개발기 후반의 지방세제(1970~1977년)

- 가. 지방세제 개편의 배경
- 나. 1974년 주민세 소득할 도입배경 및 효과
- 다. 대도시 중과세 및 인구집중 억제 도모
- 라. 1975년 사치성재산의 과세강화 및 유흥세 중과
- 마. 유흥음식세와 등록세의 세목교환
- 바. 1977년 지방세제의 변화

4.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기의 지방세제(1978~1989년)

- 가. 1979년 공한지 및 비업무용부동산 과세 강화
- 나. 1980년 대도시내 교통대책과 지방세제
- 다. 1985년 담배판매세의 신설
- 라. 1987년 토지과다 보유세 신설

5. 경제개발기 지방세제의 특징과 평가

- 가.
- 나.
- 다.

## IV. 전문화 및 고도성장기의 지방세제 ..... 350

## 1. 서론

- 가. 시기구분
- 나. 연구내용과 방법

## 2. 지방자치제 준비기의 지방세제

- 가. 1989년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체계 개편
- 나. 1990년 종합토지세의 신설
- 다. 1991년 골프·콘도회원의 취득세 과세
- 라. 1992년 지역개발세의 신설
- 마. 1가구 2차량 중과

## 3. 지방자치제 시행이후의 지방세제

- 가. 1995년 지방세제의 변화
- 나. 1996년 자동차세 납세필증제도의 폐지
- 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제도 도입과 효과
- 라. 1999년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제도의 폐지
- 마. 2000년 주행세의 신설

## 4. 경제위기 이후의 지방세제

- 가. 교육·지방자치 연계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세 신설
- 나. 2002년 지방세제의 변화
- 다. 2005년 보유과세 강화 거래과세 완화
- 라. 종부세제도 신설과 종합토지세 폐지
- 마. 2006년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강화
- 바. 2006년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의 운영 보완
- 사.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 아.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 5. 전문화 및 고도성장기 지방세제의 특징과 평가

- 가.
- 나.
- 다.

V. 2009년이후 지방세제 ..... 600

1. 서론

- 가. 시기구분
- 나. 연구내용과 방법

2.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 가. 도입배경 및 추진사항
- 나. 지방재정제도의 개편 및 효과

3. 2011년 지방세분법

- 가. 지방세3법 분법 개편 배경
- 나. 지방세분법의 추진 및 효과

4. 취득세 세율 감면 및 인하

- 가. 거래세 세율의 감면 추진
- 나. 취득세세율의 영구적 인하

5. 2013년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

- 가. 추진배경
- 나.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 및 효과

6. 2010년 이후 지방세제의 특징과 평가

- 가.
- 나.
- 다.

VI. 지방세 통계 ..... 750

1. 지방세제 관련 통계

- 가. 지방세목 등 지방세제의 변천
  - 나. 지방세입, 지방세수(전체, 세목별) 변천 등
  - 다. 기타
2. 지방세정 관련 통계
- 가. 지방세 관련 조직·인력·예산(중앙, 광역, 기초)
  - 나. 지방세정(세무조사, 구제, 조세지원)의 변천
  - 다. 기타

## 제2편 : 지방세 운영

- I. 지방세 징수 및 세목관리 ..... 900
- 1. 서론
  - 2. 지방세의 징수 및 신장을 추이
    - 가. 지방세 세입 세목별·년도별 징수 규모
    - 나. 시도별·주요세목별 구성과 증감율의 변화
    - 다. 지방세 체납 및 체납정리 제도의 발전
  - 3. 지방세 납부제도의 발전
  - 4. 지방세 환급금 및 제도의 변화
  - 5. 지방세 세목별 관리의 변천
    - 가. 현행 지방세 개별 세목별 개요
    - 나. 지방세 세목별 이력 및 폐지세목의 개요
- II. 지방세 운영관리 ..... 1000
- 1. 지방세 세무조사의 발전
    - 가. 지방세무조사의 개요,
    - 나. 조직제도의 변천,

- 다. 조사제도의 변천 및 조사유형별 변화
- 2. 지방세 구제제도의 발전
  - 가. 납세자권리구제도 개요
  - 나. 권리구제의 초기, 정착기, 내실화, 도약기
- 3. 지방세 조세지원의 변천
  - 가.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요
  - 나. 지방세감면제도의 변천
  - 다. 시도별 감면현황 및 관리의 변천
- 4. 지방세 조직·인력관리·예산의 변천
  - 가. 지방자치제 전후 자치단체 세무조직의 개요
  - 나. 조직제도의 변천
  - 다. 인사관리, 후생복지, 교육 등에 대한 변천
  - 라. 시대적 상황과 세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앙-지방의 직제 구조변화 요인과 정책 시사점
- 5. 지방세운영의 특징과 평가
  - 가.
  - 나.
  - 다.

**제3편 : 주제별 지방세**

- I. 거래과세 ..... 1100
  - 1. 취득세
  - 2. 등록면허세(등록세, 면허세)
- II. 보유과세 ..... 1300



1.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2.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Ⅲ. 소득과세 .....	1500
1. 지방소득세	
2. 주민세(사업소세)	
Ⅳ. 소비과세 .....	1700
1. 지방소비세	
2. 담배소비세	
3. 레저세(도축세)	
Ⅴ. 기타과세 .....	1900
1. 자동차세(주행세)	
2. 지방교육세 등	
<b>제4편 : 다음시기의 과제</b>	
Ⅰ. 요약과 결론 .....	2100
1.	
2.	
3.	
Ⅱ. 다음시기의 과제 .....	2200
1.	
2.	
3.	

한국지방세 60년사 Action Plan

□ 1단계 연대사 집필 ('14. 9 ~ '15. 7)

구 분	2014년				2015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자료수집TF 구성	■											
자료수집TF 운영계획 수립		■										
자료수집	■	■	■	■								
자료수집 회의(정기)		■	■	■	■		■		■			
자료취합 및 DB화작업					■	■						
연대사 집필팀 구성	■											
집필팀 운영계획 수립		■										
가목차 작성		■	■									
집필						■	■	■	■	■	■	■
집필추진 회의(정기)		■				■		■	■	■		
집필 중간보고								■				
연대사 집필 최종보고												■

'14년 9월	'14년 10월	'14년 11~12월	'15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수집 TF구성</li> <li>- 17개시도 담당</li> <li>- 연구원, 학계</li> <li>- 원로 등</li> <li>• 연대사 집필팀구성</li> <li>- 집필진 Pool 마련→ 집필 분야별 전문가 선정</li> <li>※ 연구원 협의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수집 TF 및 집필팀 운영계획 수립</li> <li>• 자료수집</li> <li>• 자료수집 TF 및 집필팀 kick-off 회의</li> <li>• 제2차 편찬위원회 개최</li> <li>- 가목차, 집필팀 등의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수집(계속)</li> <li>• 자료수집 TF 정기회의</li> <li>- 2차회의(9월)</li> <li>- 3차회의(10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자료 취합 및 DB화</li> <li>- 자료별 분류, 정리</li> <li>- 통계자료 등 전산화</li> <li>- 각종 사진자료, 문서 자료 전자화 작업</li> <li>• 자료수집 TF 정기회의 4차</li> </ul>
'15년 2월	'15년 3월	'15년 4월	'15년 5~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필작업 착수</li> <li>• 집필추진 회의</li> <li>- 집필방향, 부분별 집필자 지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필(계속)</li> <li>• 집필추진 회의</li> <li>• 자료수집 TF 정기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필(계속)</li> <li>• 편찬실무위원회 개최 (집필중간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필(계속)</li> <li>- 최종보고준비(4월)</li> <li>➔ 편찬위 개최 - 연대사 집필 최종보고회9월</li> <li>• 집필추진 회의(3월)</li> <li>• 자료수집 TF 정기회의 (6차)</li> </ul>

□ 2단계 주제사 집필 ('15. 8 ~ '16. 9)

구 분	2015년					2016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자료수집 회의(정기)		■			■			■			■			
주제사 집필팀 구성	■													
집필팀 운영계획 수립	■													
주요 연구주제 선정		■	■											
집필			■											
집필추진 회의(정기)	■		■		■		■		■		■		■	
집필 중간보고							■				■			
연대사 및 주제사 집필 최종보고														■

'15년 8월	'15년 9월	'15년 10 ~ '16년 1월	'16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사 집필팀 구성</li> <li>- 집필진 Pool 마련→ 집필 분야별 전문가 선정</li> <li>※ 연구원 협의 추진</li> <li>집필팀 운영계획 수립</li> <li>주제사 집필팀 kick-off 회의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연구 주제 선정</li> <li>- 지방세 주요 사건 및 법령개정 사항 등</li> <li>자료수집 TF 정기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필착수(7월)</li> <li>집필팀 정기회의</li> <li>자료수집 TF, 집필팀 정기회의(9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필(계속)</li> <li>편찬실무위원회(집필 중간보고-1차)</li> </ul>
'16년 3월	'16년 4~5월	'16년 6월	'16년 7~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필(계속)</li> <li>자료수집 TF 정기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필(계속)</li> <li>집필추진 정기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필(계속)</li> <li>편찬실무위원회(집필 중간보고-2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필(계속)</li> <li>편찬위원회 개최 (집필최종보고(6월))</li> </ul>